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61
----------	-----

제출년월일 : 1994.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 안 이 유

- 지역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에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의 광역행정처리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나
-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심화,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광역대단위 공공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도에서는 시군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주 요 골 자

- 기 능 : 시군상호간 분쟁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인 부지사를 포함한 15 인 이내 구성
- 회 의 :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 의견청취 :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기관 단체의 의견청취가능

## □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1항, 제2항 -----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10제1항내지제5항 ----- 따로붙임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 ) 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기능 ) 지방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시. 군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2. 시장. 군수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사항 조정

제3조 ( 구성 ) ①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등 6인
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7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⑤ 간사는 지방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한다.

제4조 ( 위원장의 직무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 의견청취등 ) 위원장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수있다.

제7조 ( 수당등 ) 지방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 회의록 )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 운영세칙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